[별지 제26호서식] <개정 2013.3.23>

중개사무소조사·검사증명서

1. 조사·검사자 인적 사항

소 속	직 급	성 명	비 고

2. 조사·검사기간 : 년 월 일 ~ 년 월 일

3. 대상지역 :

위 사람은 「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」 제37조 제1항에 따라 중개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·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는 자임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국토교통부장관
시 · 도 지 사
시장·군수·구청장 직인

유의사항	1. 중개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·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이 조사·검사 증명서를 공무원증과 함께 내보여야 합니다. 2. 중개업자가 위 공무원의 조사 또는 검사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「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」 제39조 제1항제10호에 따라 6월 이내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.

210㎜×297㎜[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]